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차원의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과 첨단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물류신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데 필요한 신청서 서식 등과 지정 신청 등에 드는 심사비용을 산출하는 기준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9-1호

관보 제19410호(그2)(2018.12.31.)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9호(법정·지정기부금단체 등 지정·변경)” 중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 지정기부금 단체 명칭 등 정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정정 전	정정 후	비 고
○ 2018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320개)	○ 2018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324개)	관보 제19410호(그2)(2018.12.31.)
○(사)남양주지역아동센터	○(사)남양주지역아동 센터협의회	7쪽, 위에서 8번째 줄
○(사)최종현학술원	○(재)최종현학술원	8쪽, 위에서 6번째 줄
○(재)코리에트지용재단	○(재)코레이트지용재단	8쪽, 위에서 29번째 줄
		9쪽, 위에서 6번째 줄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 (사)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 (사)린덴바움
- (사)희망남도봉사단
- (재)숲과나눔

●환경부고시제2019-19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댐설계기준(KDS 54 65 00, KDS 54 30 00, KDS 54 20 10) 및 표준시방서(KCS 54 65 05, KCS 54 30 05, KCS 54 20 10)」 제·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1일

환경부장관

1. 기준명 : 댐설계기준(KDS 54 65 00, KDS 54 30 00, KDS 54 20 10)

표준시방서(KCS 54 65 05, KCS 54 30 05, KCS 54 20 10)

2. 구 분 : 제정(KDS 54 65 00, KCS 54 65 05),
 부분 개정(KDS 54 30 00, KDS 54 20 10, KCS 54 30 05,
 KCS 54 20 10)
3. 제·개정목적
 ○ 선진댐기술(Hardfill, AF(C)RD, GSSD)과 기술융합공법(RCCR, PCPT)의 도입을 위한 댐설계기준 제·개정
4. 주요 개정내용
 ○ 선진기술공법(Hardfill, AF(C)RD, GSSD) 건설기준 도입 및 표준화
 ○ 기술융합공법(RCCR, PCPT) 건설기준 도입 및 표준화
5. 관련단체 : 한국수자원학회(☎ 02-561-2732)
6. ‘댐설계기준(KDS 54 65 00, KDS 54 30 00, KDS 54 20 10), 표준시방서(KCS 54 65 05, KCS 54 30 05, KCS 54 20 10)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댐설계기준(KDS 54 65 00, KDS 54 30 00, KDS 54 20 10), 표준시방서(KCS 54 65 05, KCS 54 30 05, KCS 54 20 10)’ 제·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044-201-7633),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9-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